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돈산업”



# 대한한돈협회

우 0664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 ☎(02)581-9751~4 / Fax581-9768 농가지원부

문서번호 한돈협농 제321-05호  
 시행일자 2024. 08. 12.  
 수신 임원,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처리과				
담당자				

## 제 목 준회원 제도 확대 안내 및 가입 협조 요청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회에서는 한돈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준회원 제도>를 운영하며 가입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3. 이에 이번 제3차 이사회('24.7.16)에서 준회원 제도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준회원 제도는 전국 한돈농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와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 1. 주요 규정 개정 내용

#### 가. 준회원 범위 확대

구분	내용	가입 대상	회비
기존	한돈농가 또는 전후방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한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종사자 (사료, 약품, 수의, 유통 등 관련 산업 종사자)	(현행) 5만원 ↓ (개정) 1만원
개정	한돈산업에 관심 있는자 (명예준회원으로 구분)로 확대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면제

## 나. 협조 요청

- 이번 규정 개정은 더 많은 한돈농가(50두 이하 사육)와 한돈산업 전·후방 산업 종사자, 그리고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분들이 한돈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 산업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전국 한돈 가족 여러분들의 개정된 준회원 제도에 대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문의

- (대표) 02-581-9751 (직통) 농가지원부 070-4616-4256  
- 가입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문의

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